

### 3-3-7. 폐기물 처리 계획

가. 사업장의 범위(시행령 제2조 :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)

-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
- ② 폐기물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- ③ 일련의 공사,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
나.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(시행령 제6조 : 폐기물의 처리기준)

- ① 폐기물은 그 수집·운반, 보관,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·운반, 보관,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, 가연성,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-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
다.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(법 제24조)

1) 사업장폐기물 배출자

- ① 대기, 수질,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
-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
-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,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
  - ㉠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
  - ㉡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.

2) 배출자 신고

-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, 발생량,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1)항 ①,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
- ③ 1)항 ③호는 배출예정일(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)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

3) 변경신고

-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/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
-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
-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
-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
- ⑤ 신고기간 -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

1)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,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

라. 사업장폐기물의 인계, 인수 (법 제25조)

- 1)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, 운반,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, 운반,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(지정폐기물이 아닌 것)

- ① 일련의 공사,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  - ② 월평균 1.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
  - ③ 월평균 0.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, 분진, 폐주물사, 샌드블라스트폐사, 폐내화물, 도자기조각, 조각재, 안정화 고형화처리물, 폐촉매, 폐흡수제 폐흡착제
- 4)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~ 시·군·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

마.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

- ① 보관방법 :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,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  - ② 처리계약 :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 
(하도급자, 수집·운반업, 철거업, 일반건설업, 중기업,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)
  - ③ 운반방법 :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,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
    - 1) 운반을 위탁할 경우 :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·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방법
    - 2) 스스로 운반할 경우 :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
- ◎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: 일시적으로 수집·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
- 유효기간 : 3개월(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)
  - 신청서류 : 신청서, 차량등록증사본, 차량사진
  - 처리기간 : 3일

④ 처리 8단계

1단계	업체선정 및 확인	수집 운반자/중간처리자 각각 선정(3자계약)	-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같이 보유한 업체 선정이 유리하며 능력과 규모있는 업체선정이 중요 - 중간처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법처리가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함
2단계	계약	수집운반계약/중간처리계약/소각처리계약	- 성상별 반출에 따른 수집운반계약/중간처리계약/소각대상 폐기물계약(소각전문업체)이 각각 체결되어야 함.
3단계	배출자 신고	신고필증수리 (관할구청/동사무소)	- 배출자가 신고하며 통상 배출3일전에 신고하여야 함.
4단계	성상별 분류	배출자 의무사항	- 배출자는 건설폐기물(매립지처리)/건설폐재류(중간처리)/소각대상폐기물(소각처리)로 각각 분류 및 반출하여야 함.
5단계	반출	성상별 반출	- 처리장소 지정하여 성상별로 반출시킴
6단계	인계서 작성	간이 인수인계서제도	- 통상 4부 작성하여 1부는 배출자보관하고 3부는 운반업자한테 교부(하단참조)
7단계	반출대장작성	관리대장(목록형대장)	- 폐기물 반출사항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.
8단계	준공서류제출	처리확인서 제출	- 처리확인서 제출

바. 사후 관리

-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관리대장기록 : "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"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(4호서식) (규칙12조)
- ③ 처리확인서 :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"처리확인서"를 교부받아야 한다.
- ④ 폐기물인계서 :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처리실적보고 :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,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"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"를 제출하여야 한다. (30호 서식)

사. 주의사항

-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,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,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.

아. 건설폐재 재활용용도(환경부고시제1997-12호, 제7조관련)

- ① 보수공사용
- ② 도로기층용, 보조기층용
- ③ 콘크리트 제조용
-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
- ⑤ 포장타르
- ⑥ 아스팔트 혼합물
-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
- ⑧ 유화아스팔트
- ⑨ 파쇄골재이용
- ⑩ 건축, 토목공사의 자재이용
- ⑪ 건축, 토목공사의 성토용,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
- ⑫ 파티클보드, MDF(섬유판)제조용,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